

감정평가서

건명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소유물건(2025타경30409)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영주
감정서번호	SIZ25-0313-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씨브감정평가법인 청주시사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정진

이정진



(주)써브감정평가법인 청주시사 지사장 이정진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삼천이백오십칠만팔백원정 (₩32,570,8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영주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2025타경30409)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3.17	2025.03.17	2025.03.24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522 1,522x----- 2,533 1,522 1,011x----- 2,533 이	토지	1,522	21,400	32,570,800
합계					₩32,570,8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이강운

이강운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저수지"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등

가.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1) 토지

기호	소재지	공부 면적 (㎡)	사정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관성리 176-2	1,522* 1,522/ 2,533	914.52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부정형 완경사	4,650	-
2	관성리 176-3	1,011* 1,522/ 2,533	607.48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부정형 완경사	4,650	-

나.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사항)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다. 주위 환경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03.17.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정함.

4. 실지조사기간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2025.03.17. 일자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5.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사항 등은 귀 법원 의뢰목록,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였음.

나. 본건 토지 기호(1,2)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일반거래 관행 등을 감안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다. 본건은 인접지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에는 별도의 측량을 요함.

라. 본건 토지 기호(1,2) 일부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 과 같이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바, 본 평가에서는 이점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마. 본건은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로서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지분만의 평가이며, 해당 지분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 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

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공시지가준법,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 있음.

나. 원가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다. 비교방식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라. 수익방식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마. 공시지가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가.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다.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함.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 토지의 평가는 상기 감정평가방식 중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다른 평가방법(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IV. 토지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

1.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감정평가방식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1) 인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2025.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금왕읍 각회리 산66	4,270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소로한면	부정형 완경사	10,400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인근지역(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 포함)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 하되,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하여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기호(A)를 선정·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1) 시점수정 기준

- ①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거시경제지표로서 국지적인 토지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용치 아니하였음.
- ②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추정 적용하였음.

2) 지가변동률

지 역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2025.01.01 ~ 2025.03.17 (충청북도 음성군 보전관리지역)	0.128% (1.00128)	$(1 + 0.00052) \times (1 + 0.00052 \times 45/31)$ ≒ 1.00128

라.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마. 개별요인 비교

본건 평가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 간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1) 비교항목

조 건	비 교 항 목
접근 조건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자연 조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토양, 토질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기타 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비교치 산정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2	-	0.90	1.20	-	1.00	1.00	1.080	본건은 비교표준지(A) 대비 접근조건(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하나, 자연조건(토지의 면적 및 경사도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인근지역 감정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단위 : 원/㎡]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고
1	병암리 산32	보전관리	임야	2020.02.07	법원 경매	17,700	-
2	구계리 산17-36	보전관리	임야	2024.04.04	담보	17,000	-
3	각회리 산65	보전관리	임야	2022.07.15	담보	10,000	-
4	관성리 384	보전관리	임야	2022.10.31	시가 참고	32,900	-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단위 : 원/㎡]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5	관성리 산44-5	임야	499	보전관리	30,000,000	60,120	2021.10.03	토지만 거래
6	관성리 474-6	임야	562.88	보전관리	11,797,000	20,958	2023.09.04	토지만 거래
7	관성리 403-11	임야	869	보전관리	70,000,000	80,552	2022.06.22	토지만 거래

4) 인근지역 기간별 낙찰가율 통계

(출처: 인포케어)

[충북 음성군 2024년 03월 ~ 2025년 02월 (용도별)]

구분	낙찰율(기준:낙찰가)			낙찰율(기준:낙찰건)			미진행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율(%)	총건수	유찰건수	낙찰건수(율)	
주택	8,425,135,710원	5,275,498,825원	62.6%	90건	76건	14건(15.6%)	17건
집합건물	12,351,700,000원	8,574,075,538원	69.4%	374건	294건	80건(21.4%)	52건
상가	17,827,229,200원	6,623,674,100원	37.2%	260건	227건	33건(12.7%)	50건
공장	38,223,583,780원	21,770,883,999원	57.0%	66건	50건	16건(24.2%)	23건
특수부동산	3,182,817,300원	1,372,697,000원	43.1%	22건	19건	3건(13.6%)	7건
토지	22,241,864,979원	11,559,806,289원	52.0%	523건	435건	88건(16.8%)	80건
기타토지	12,350,000원	7,278,900원	58.9%	13건	12건	1건(7.7%)	7건
차량외 기타	87,600,000원	42,990,000원	49.1%	7건	5건	2건(28.6%)	0건
합계	102,352,280,969원	55,226,904,651원	54.0%	1,355건	1,118건	237건(17.5%)	236건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① 선례(사례)선정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상기 선례(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기호(3)을 선정함.

② 산출산식

$$\begin{aligned}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선례(사례) 기준 표준지의 가격}}{\text{기준시점 표준지의 가격}} \\ &= \frac{\text{선례(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end{aligned}$$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가격 (원/㎡)	보정치
선례 (기호 1)	17,700	1.08103	1.00	1.035	19,804	1.902
비교표준지 (기호 A)	10,400	1.00128	-	-	10,413	

※ 선례 시점수정 : 2020.02.07.~ 2025.03.17. 충청북도 음성군 보전관리지역 지가변동을

※ 비교표준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 비교표준지(A)/선례(1) 개별요인비교치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A/(1)	-	1.15	0.90	-	1.00	1.00	1.035	비교표준지(A)는 선례(1) 대비 접근조건(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방위,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본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인근지역 기간별 낙찰가율 통계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A:1.90>으로 결정함.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기호	비교 표준지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가격 (원/㎡)	결정단가 (원/㎡)
1,2	A	10,400	1.00128	1.00	1.080	1.90	21,368	21,4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토지는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을,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5)를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5	관성리 산44-5	임야	499	보전관리	30,000,000	60,120	2021.10.03	토지만 거래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라.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1.10.03.~ 2025.03.17	4.680% (1.04680)	충청북도 음성군 보전관리지역

마. 지역요인 비교

거래사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바. 개별요인 비교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2	-	0.80	0.43	-	1.03	1.00	0.354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임도의 배치 등), 자연조건(면적, 경사도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사례 일부 접도구역)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2	60,120	1.000	1.04680	1.000	0.354	22,279	22,300

3.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 토지단가(원/㎡)	비 고
1,2	21,400	22,300	-

4.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5. 토지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공부 면적 (㎡)	사정 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	914.52	914.52	21,400	19,570,728	-
토지	2	607.48	607.48	21,400	13,000,072	-
감정평가액(합계)					32,570,800	-

V.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VI.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2	32,570,800	-
합계		32,570,800	-

2. 종합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저수지"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용도 및 규모, 위치, 주위환경, 인근 평가선례 및 거래가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이 인정됨.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76-2	임야	보전관리지역	1,522 1,522x---- 2,533	914.52	21,400	19,570,728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지분 전부
2	동 소	176-3	임야	보전관리지역	1,522 1,011x---- 2,533	607.48	21,400	13,000,072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지분 전부
합 계								₩32,570,8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저수지"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동측 인근으로 시내버스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동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각 필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공히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점용)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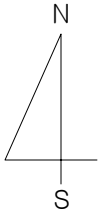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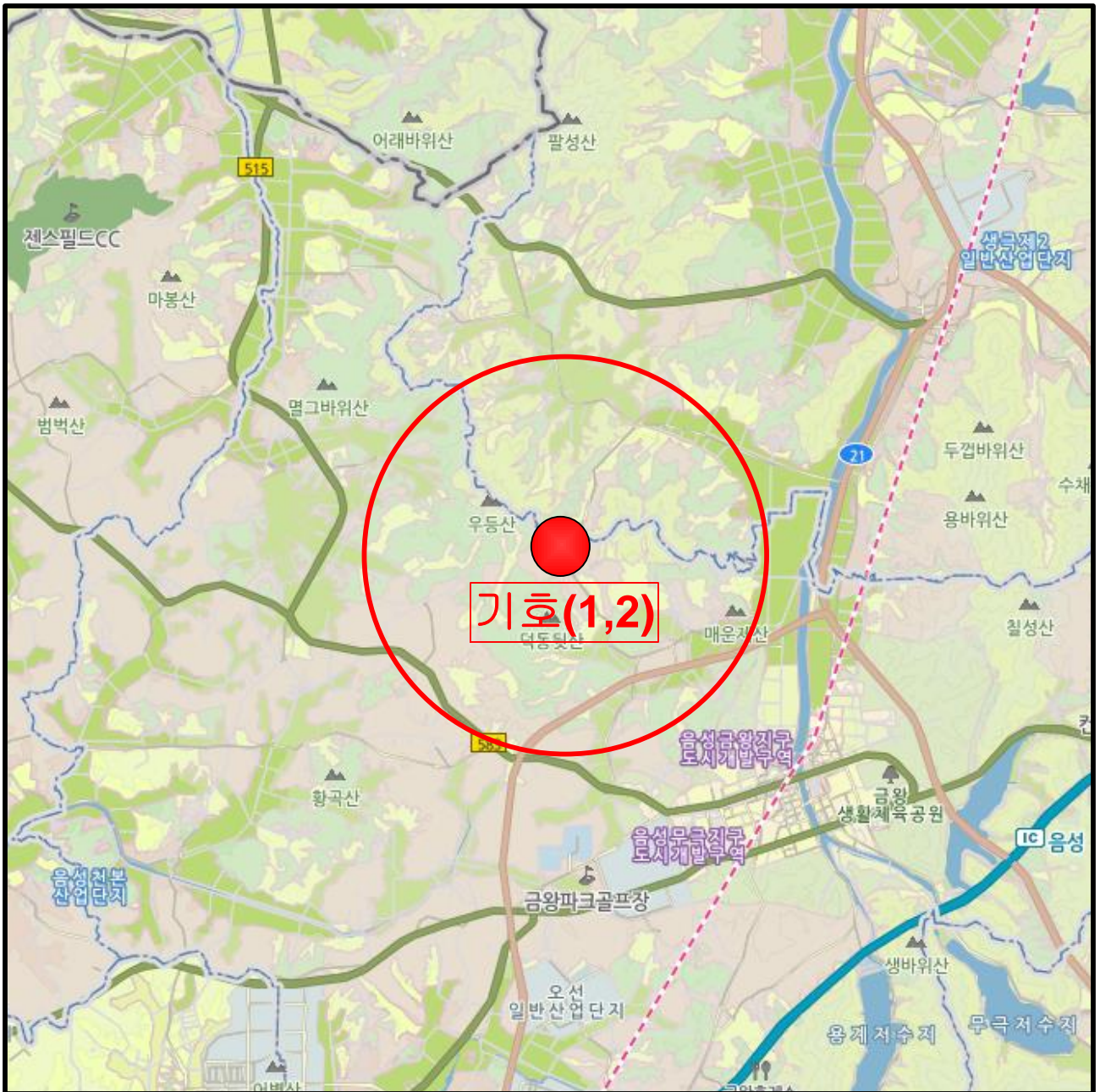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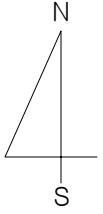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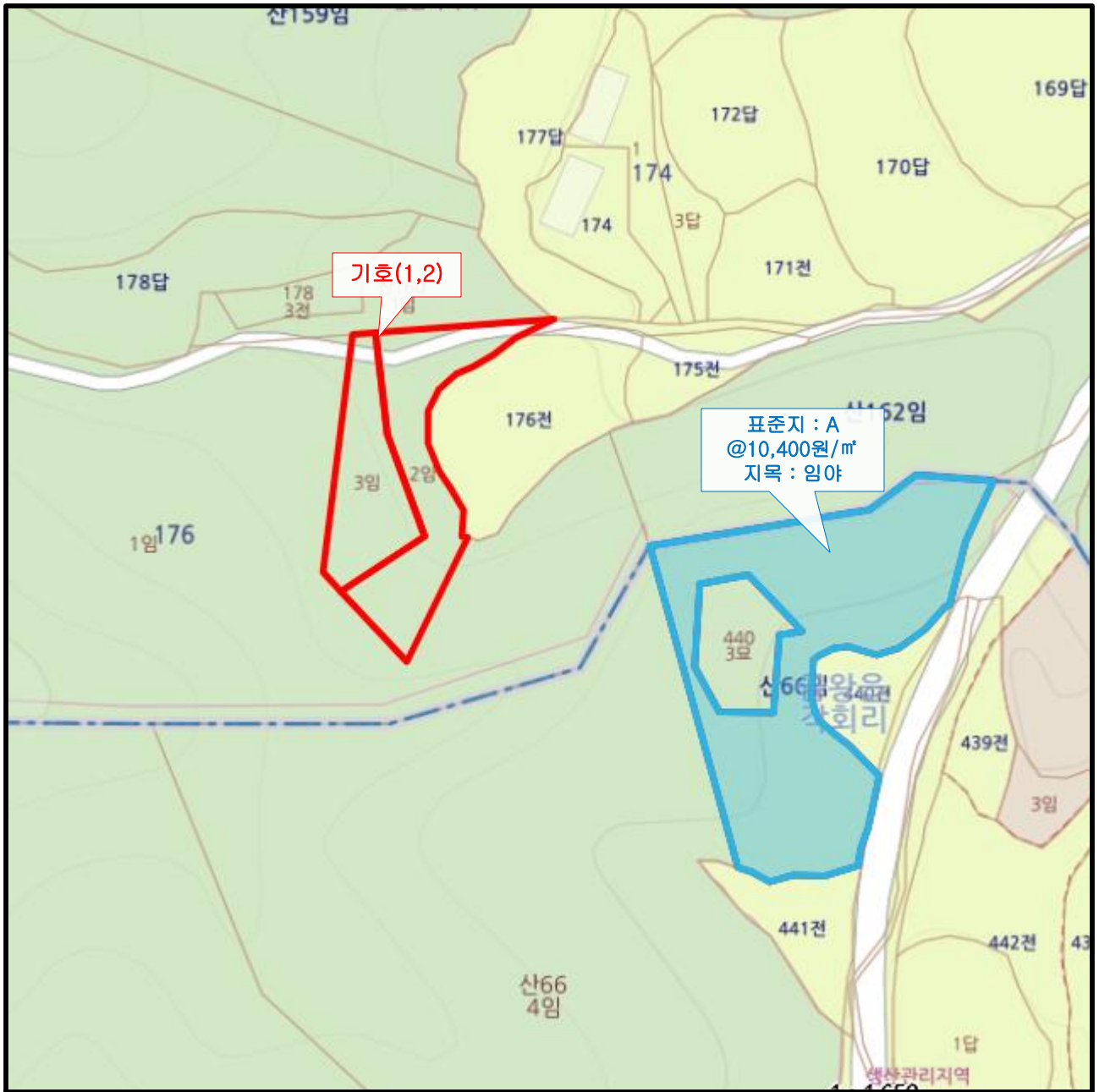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76-2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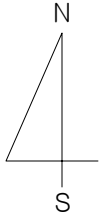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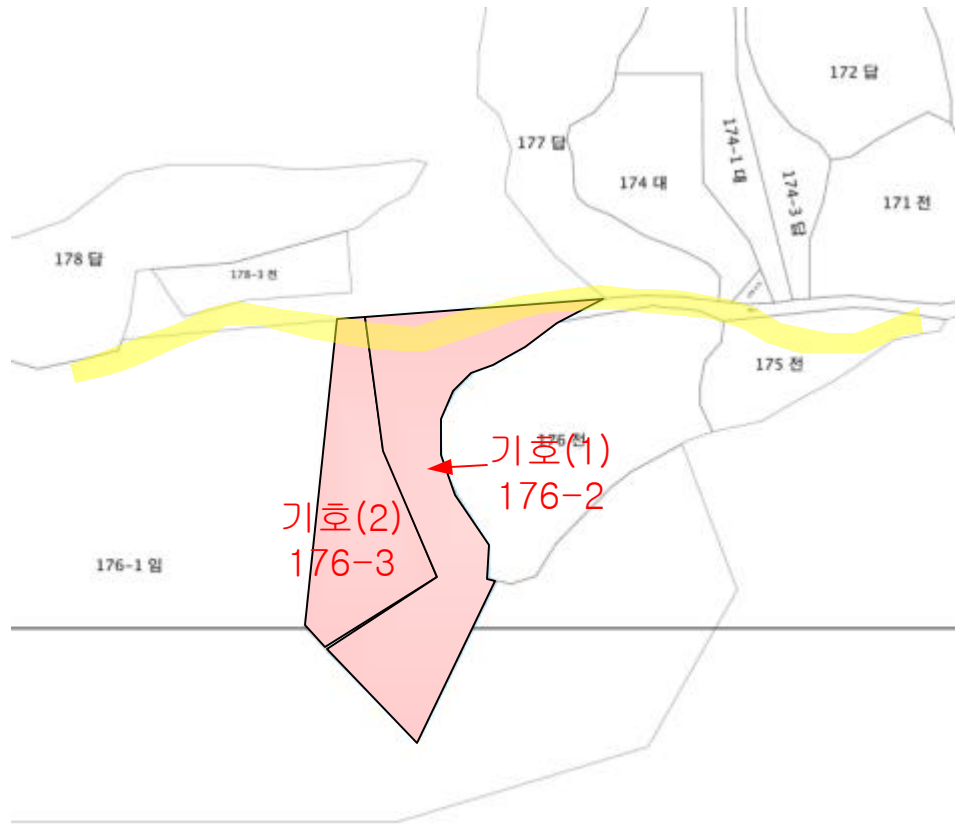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76-2외



지 적 개 황 도



NO SCALE



범 례	평가 대상 토지 :		평가 건물 1층 :		지 하 층 :	
	도 로 선 :		평가 건물 2층 :		제시외건물(평가) :	
	도시계획도로선 :		평가 건물 3층이상 :		제시외건물(평가외) :	



1



1



2



2



1



2

